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70	백선희의원 등 11인	’25.8.22.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5.12.16)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25.12.18)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7	손명수의원 등 12인	’25.12.12.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5.12.16)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25.12.18)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8차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 12. 30.)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

② 이 법(법률 제20954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휴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로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 ② 이 법(법률 제20954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